

## 5. 租稅減免規制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5,195號 1996. 12. 30

### 주요 골자

- 가. 현재는 중소기업 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제1항 및 제117조 제6항).
- 나.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21조 제1항).
- 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퍼센트로 단일화 함(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의 2 및 제92조의 4).
- 마.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 함(법 제99조).
- 바. 법인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18조 제1항).
- 사.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년간 연장함(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항).

## 개정 이유

모든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등을 일부 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세제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특례등) ①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1호”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년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과세년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년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

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세액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3조의 제목 중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으로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음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이 동항 동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

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및 주식의 시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목 중 “세액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세액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3호 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제1항 중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중 “1996년”을 각각 “1998년”으로 한다.

제31조 제7항 본문 중 “제6조”를 “제6조 제1항”으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을 영위하는”을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사업전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전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42조 제1항 중 “수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과액공제 등”을 “과액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영농1자녀”를 “영농자녀”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으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농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중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자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

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제2항 제8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12조·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3조·제16조·제17조”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1996년”을 “1998”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64조 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다)가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실수요자(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의 2 제1항 본문 중 “1996년”을 각각 “1997년”으로 한다.



제7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제75조 제1항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발조합법”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중 “이자소득”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제80조의 2 제4항 제2호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중 “분리과세”를 “분리과세 등”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 중 “소

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당해”로, “원천징수한다.”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8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2조의 4 제1항 중 “1996년”을 각각 “1997년”으로 한다.

제2장 제9절에 제92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 5(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 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

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년도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료기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이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 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급사료

제99조 제5호 중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 제2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9.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항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가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이하 “아시아·유럽정상회의”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의 2의 제목 “납부세액경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조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억원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 다)은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항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세액 한도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100분의 1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휴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직전 1억원의 공급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직전 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의 공급대가
2. 당해 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년도에 휴업을 하여 직전 년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공급대가

④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대가·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 제목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를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

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1. 음식·숙박용역
- 2. 광고용역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3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조에 제

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11. 한국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8조 제1항 중 “제8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111조 제7호 중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개발사업”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11호 중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제112조 제1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 관련시설주”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3조 제2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일부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4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1호 중 “부동산”을 각각 “재산”으로 하고, 동항 제2호·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용 부동산”을 각각 “사업용재산”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 단서 중 “자산”을 “재산”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부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7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이 법 부칙 제14조”를 각각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6항 중 “제6조·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항 및 동조 제7항 중 “이 법 부칙 제13조”를 각각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하며, 동조 제7항 및 제8항 중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제118조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3조”로, “이 법 부칙 제15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이 법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 제4호 중 “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로 한다.

1. 제4조·제8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제118조 제2항 본문 중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거주자의 사업소득(제92조의 5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 중 “이 법 부칙 제15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제92조의 4, 이 법 부칙 제14조”를 “제92조의 4·제92조의 5,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 제4호 중 “이 법 부칙 제13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한다.

1.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

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8조·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제121조 제1항 중 “공제할 세액으로서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하고 자본재산업외의 산업의 경우에는 5년”을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2호 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며, 동표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표에 제143호 및 제1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14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4.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  
금보험공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  
률 부칙 제1조 제2항 중 “1996년”을  
“1998년”으로, “1997년”을 “1999년”으로  
한다.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  
률 부칙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  
투자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대하  
여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제88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 제2항 제5  
호·제103조 제5호 및 제11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  
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 제5항의 개  
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2

항 및 제8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  
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  
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4조(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②제100조 제2항·제103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

용한다.

⑤제10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13조 제2항 본문 및 제114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제2항·제60조 제3항(제13조 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118조 제1항 제2호(제13조 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 제2항 단서 및 제114조(동조 제2항 본문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 제1항 및 제6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 제1항·제25조 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 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 제1항(적용기한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 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26조 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